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18248(본소), 2019가합21203(반소) 판결
[구상금 · 정산금 지급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우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용

변론 종결2020. 4. 16.

판결 선고2020. 5.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6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96,659,4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2018. 6. 29.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2018. 7. 2.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6,659,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D의 부친인 E가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E가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 2) 피고 B는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F 토지1) 를, 피고 C는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G 토지2) 및 분할 전 H 토지3) 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I는 피고들의 형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 3) J은 피고들의 지인으로서 I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 1) 피고들은 2016. 7. 9. J의 아들인 K에게 위 분할 전 F, G, H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매매대금 합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이후 피고들은 위와 같은 토지의 매도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 12.경 K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하고, K는 공사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1.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⁴⁾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44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12. 7.부터 2017.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12. K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하고, K는 집합건물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I와 J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과정에 입회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이른바 '업계약서'의 작성 및 2,200,000,000원 반환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00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들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토목공사, 지하주차장 공사, 시스템에어컨 공사,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반영하고, 피고들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980,000,000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되, '업계약서'상의 작성일은 2017. 3. 20.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이 '업계약서'가 작성되자 그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 등을 감안하여, 원고는 위 '업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업계약서'상의 공사대금 9,98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에서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와 원고가 부담하게 될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공사 마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J, I에 대한 금원의 지급

1) 원고는 2017. 12. 19.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아래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표'라고 한다) 상대방란 기재 각 상대방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0.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급내역표]

1	2017. 12. 19.	O	650,000,000	수표로 지급
2	2017. 12. 20.	O	150,000,000	
3	2017. 12. 20.	J	400,000,000	
4	2017. 12. 29.	P	500,000,000	
소계	1,700,000,000			
5	2018. 1. 10.	피고들	100,000,000	
6	2018. 1. 11.	피고들	100,000,000	
7	2018. 1. 15.	피고들	90,000,000	
8	2018. 1. 19.	피고들	210,000,000	
소계	500,000,000			
합계	2,200,000,000			

마.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용 대납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7. 3. 3. 주식회사 Q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Q은 2017. 12.경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347,649,446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에 유보하고 비용을 정산한 뒤 이 사건 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사업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7. 12. 19.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7,649,446원(=

280,227,000원 + 67,422,446원, 이하 '이 사건 ① 비용'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1. 3. R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R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R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7. 12. 29. R에게 위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로 29,010,000원(이하 '이 사건 ② 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1. 8. 주식회사 Q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신탁보수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③ 비용'이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③비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비용'이라고 한다)을 피고들 대신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

피고들은 2019. 1. 1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617호로(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청구채권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각 350,000,000원 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S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시 T건물 U호 외 7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들과 I 사이의 채권양도약정

피고들은 2020. 1. 7. I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합계 1,0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의 6, 을 제1, 19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비용의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2.경 내지 2017. 1. 12.경 K와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피고들 및 K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피고들 및 K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영업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비용 합계 396,659,446원(= 이 사건 ① 비용 347,649,446원 + 이 사건 ② 비용 29,010,000원 + 이 사건 ③ 비용 20,000,000원)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96,659,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약 9,980,000,000원 중 2,2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돌려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각 비용은 원고가 지급받은 7,780,000,000원(= 9,980,000,000원 - 2,200,000,000원)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981,552,20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980,000,000원으로 부풀릴 경우 수급인인 원고는 법인세 등 세금과 경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가 투입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약 5,800,000,000원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1,9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합계 7,780,000,000원(= 5,800,000,000원 + 1,9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비용을 포함한 400,685,446원5) 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출금내역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각 비용 합계 396,659,446원을 7,780,000,000원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9,980,000,000원에서 7,7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계 2,200,000,000원의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9.부터 2018. 1. 19.경까지 피고들 및 J, O, P(이하 'J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정산금 2,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J 등에 대한 지급은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가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J 등에게 교부한 1,7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와 J 등과 사이에 체결한 제주시 V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제주도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 ② J 등에게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교부받을 변제수령권이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은 2018. 1. 10.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J 등이 지급받은 나머지 1,700,000,000원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2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지급한 1,7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①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2항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2. 5. J의 사위인 O와 이 사건 제주도사업에 관하여 O로부터 800,000,000원을 투자받고, 이후 투자이익금 80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1,600,000,000원(투자원금 800,000,000원 + 이익금 800,000,000원)을 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2016년 등부 제394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 20.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J 등에게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한 다음(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Z조합신본지점, AA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 7. 20. J과 사이에 투자원금 잔액 250,000,000원(= 800,000,000원 - 550,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8호로, 투자이익금 800,000,000원 중 400,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9호로, 위 각 투자원금 250,000,000원과 이익금 400,000,000원을 원고가 J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7. 2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O, AC, AD(J의 딸)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한 다음, O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J으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이익금에 관하여 작성한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9호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주도사업과 관련하여 J 내지 O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2017. 12. 19. 이전에 소멸하였고, 원고가 2017. 12. 19. 이후 J 등에게 교부한 금원은 이 사건 제주도사업이 아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4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 29. P와, P가 5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약정이자 3%, 변제기 2018. 12. 28.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7. 12. 29. 원고와 P 및 K 사이의 이메일(갑 제22호증)에 원고가 P에게 대여한 위 500,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8. 12. 28.자 완불확인서가 위 차용증과 함께 작성되어 편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P 사이에 별도의 대여계약에 의하여 500,000,000원이 교부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교부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P는 위 500,000,000원을 2018. 1. 5. J에게 송금하였고, J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50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6).

③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17. 12. 19. 피고들로부터 송금받은 2,576,587,883원7) 에서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합계 1,7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 합계 500,000,000원에 대한 교부내용 또한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금원 교부에 대해서 피고들 및 I는 원고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에 기재된 원고의 금원 지급내역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J은 피고들의 지인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들의 형 I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J은 K를 내세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의 주식회사 Q에 대한 공사대금 등 자금집행요청서의 피고들 이름 옆에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사실상 운영자인 E와 I 및 J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J의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980,000,000원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업계약서'의 작성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8).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J의 지위와 역할,

J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 점, K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J은 위 K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J과 J의 사위인 O 및 P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J 등에 대한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J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를 교부하였고, 위 입출금내역표에는 원고의 J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위 입출금내역표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위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659,4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9.부터, 피고 C는 같은 2018. 7. 2.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9,980,000,000원 중 2,2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원고가 I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은 결국 원고로부터 700,000,000원(= 2,200,000,000원 - 1,50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00,000원(= 700,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00,000,000원의 정산금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산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정승혜

판사노용준

1) F 토지는 2017. 2. 7. 용인시 기흥구 F 답 1188m²(이하 'F 토지'라고 한다)와 L 답 470m²로 분할등기 되었다.

2) G 토지는 2017. 2. 7. 용인시 기흥구 G 답 1260m²(이하 'G 토지'라고 한다)와 M 답 228m²로 분할등기 되었다.

3) H 토지는 2017. 2. 7. 용인시 기흥구 H 전 1067m²와 N 전 858m²(이하 'N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F 토지, G 토지, N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5) = 이 사건 ① 비용 347,649,446원 + 이 사건 ② 비용을 30,000,000원으로 계산 + 이 사건 ③

비용 20,000,000원 + '통대출 수수료 소득세' 3,036,000원

6) J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의 1) 참조.

7) 위 2,576,587,883원은 피고 C가 AE조합 및 A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9,156,470,600원에서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에 대한 피고 C의 기존 대출금 채무 등 피고들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다(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 27 참조).

8) J은 수사기관 조사시 E에게 피고들에게 발생할 소득세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E가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28호증의 2, 38, 39쪽 참조).